

## 생계비 용자 신청서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일부터 10일
------	-----	----------------

### 1. 신청 내용 관련 사항

신청구분	[ ] 최초 신청 [ ] 과거 용자 (용자계약:   년   월, 용자금액:       원, 상환금액:       원)		
우대 사항	[ ] 해당없음   해당 ([ ] 고용위기지역 [ ]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금액	원		
용자기간	일반	[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2. 신청인 관련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메일:
우편물 수령지(주소와 다를 경우):	
휴대전화번호:	

### 3. 체불 사업장 관련 사항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또는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 가동 여부: [ ] 가동 중(휴업 포함) [ ] 폐업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인의 재직 여부: [ ] 재직 중 [ ] 퇴직	입사일:   년   월   일, 퇴직일:   년   월   일

### 4. 체불 관련 사항

임금	체불금액:           원	체불기간:   . . . . ~ . . . .
휴업수당	체불금액:           원	체불기간:   . . . . ~ . . .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체불금액:           원	체불기간:   . . . . ~ . . . .
퇴직급여등	체불금액:           원	체불기간:   . . . . ~ . . . .
합 계	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12,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사업 고시」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계비 용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아래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처 리 [ ] 승인 [ ] 불승인	불승인사유 :
--------------------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본 사업 운영과 관련 공단에서는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부터 제22조에 따라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며, 본래의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생계비 용자 신청과 관련하여 귀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수집·이용 목적: 생계비 용자 대상자 선정

나. 수집·이용할 항목

- ▶ 인적사항, 재직정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력(고용정보 및 보수총액 신고자료 포함), 체당금 지급 이력, 실업급여 등 정부 복지사업 부정수급 이력
- ▶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제공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료

다.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최대 5년)

본인은 위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고, 생계비 용자 대상자 선정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단체를 통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생계비 용자 신청서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②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고객만족 조사기관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항목·보유기간

- ▶ 제공할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관련기관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제도 개선 및 제도 운영 평가를 위하여 조사하는 고객만족 조사
-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고유식별정보, 인적사항, 수혜내역
- ▶ 제공받은 자의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이 동의는 상기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도 본인은 개인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과 조회에 대한 동의로 인정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용자 신청자는 ①,②항과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정보는 용자 신청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생계비 용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

이름:

(서명 또는 인)

### 작성 방법

1. 신청 내용 관련 사항란 중 신청구분란은 과거에 생계비 용자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과거 생계비 용자(「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7호에 따른 임금채불생계비 용자 포함)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용자계약일, 용자금액, 상환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 가. 우대사항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해당란에 체크합니다.
  - 나. 신청금액란은 십만 단위 미만 절사하여 작성하며, 생계비 용자의 상한액 내에서 실제 사유 발생 금액으로 신청합니다.
  - 다. 용자기간란은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희망하는 용자기간에 체크합니다.
2. 신청인 관련 사항란은 신청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3. 체불 사업장 관련 사항란은 신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재합니다.
4. 체불 관련 사항란은 신청 근로자의 체불 항목별로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체불금액, 체불기간을 각각 기재합니다(체불이 연속되지 않는 여러 기간에 발생한 경우 기간별로 나누어 작성하고,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구비 서류

1. 건설일용근로자: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
  - ①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③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2. 건설일용근로자 외: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
  - ①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재직근로자에 한함)
  - ③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